

1. 개정이유

임시승선자의 대상을 현실화하고, 국제협약 위반선박이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 운항 시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선박의 개조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일정기간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원 자격을 확대하고, 선박검사 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시승선자 및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 개선(안 제5조, 별표6)

가축, 동물, 활어 및 위험물 운송차량 운전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인정하고, 화물관리인의 최대인원 산정 시 거주구역의 단위면적을 선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나. 국제협약 위반선박에 대한 제재 및 전자증서 발급근거 마련(안 제26조, 제82조의2)

국제협약 위반에 따른 항해정지 명령 등에 불복하고 무단으로 운항할 경우 해당 선박의 협약증서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상업무 경감을 위해 전자적 형태의 선박검사 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 및 절차 보완(안 제32조)

동일한 형식의 설비로 교체 등 선박 복원성에 영향이 없는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의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허가 신청 시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 자료를 제출토록 함

라. 선박 검사원 자격기준 확대 및 정부대행기관 지도감독 근거마련(안 제45조, 제62조, 제88조의2, 제89조의2, 제97조의2)

3급 해기사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경우 학력에 관계없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형식승인시험기관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근거를 마련함

마.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사신청 양식의 인정(안 제82조의3)

선박소유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통합서식으로 선박검사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협약증서양식 개정 및 용어순화(안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의2호, 제16호, 제16의2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제26호 등)

국제해상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의 개정에 따른 국제협약증서의 양식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포함한다) 및”을 “포함한다) 및 선박정비, 화물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실습 등”을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실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호에 따른 선박을 이용한 공익 목적의 행사(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한정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자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

가.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물질류 등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승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적재하여”를 “실어”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정박 중에 선내”를 “선내”로, “하역·수리작업”을 “하역·수리작업·해상공사”로,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를 “교대자(해당 선박의 정박 중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적재한”을 “실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기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변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을 “기관의 교체 및 기관성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요부의 교체·변경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종성에”를 “조종성능에 중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 반지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

가스산적운송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

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제24조제5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1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제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

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5항”을 “법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만재흡수선증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증서의 교부를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제만재흡수선증서 사본
2. 건원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
3. 건원계산서 사본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제32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2호) 나목 중 “복원성자료”를 “복원성자료(대형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료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

제36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를 “제2항에 따른”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을 요청”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6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재화물”을 “실린 화물”로 한다.

제77조제1항제2호 중 “제한반경”을 “제한 반지름”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적제한”을 “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적재된”을 “실린”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8항”을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6장에 제82조의2, 제82조의3, 제88조의2 및 제8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호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면제증서, 국제만재흡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증인서,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이하 “전자증서”라 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82조의3(검사신청 서식) 선박소유자가 건조검사,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도면승인, 검정신청, 예비검사, 제한하중 등의 확인,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

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검사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의2(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게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의2(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0조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95조제3항 중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보안업

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마목1)부터 3)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3급항해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제97조의2제1항제2호마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별표 6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임시승전자 중 제5조제10호에 따른 화물관리인은 제3호에 따른 선원실의 기준을 준용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라) 중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 또는 하반(下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중 “양호하지 않다고 인정되면”을 “양호하다고 인정되면”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보기(補機)”를 “선박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補機)”로 하고, 같은 호 라목2) 중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을 “크랭크

축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보기”를 “보기(「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제1종보기와 제2종보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1)가)(3) 중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을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또는 하반”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의 후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4) 중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선박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있는 발전기 또는 선박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로 하고, 같은 호 나목5)가) 중 “보기”를 “보기(「선박기관기준」 제2조에 따른 제1종보기와 제2종보기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워터제트 추진장치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확인결과에 따라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되면 주축을 뽑아 내지 않을 수 있다.

- (1) 커플링 볼트의 상태
- (2) 주축의 선수축 및 선미축 베어링 상태
- (3)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의 상태(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 (4) 임펠러 상태
- (5) 주축 선수축 밀봉장치의 주요부분
- (6) 개방된 스러스트 베어링 상태

별표 15 제1호다목 중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추진축계와 스테

인리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질의 프로펠러축계”를 “스테인레스강 또는 이와 동등한 비자성체재질의 프로펠러축계와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추진축계”로 한다.

별표 15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	구조변경허가 대상
공통	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 나. 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 등의 적용이 다르게 되도록 하는 선박의 용도 변경
여객선	가.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다.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또는 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고정식 가스·포말·가압분무·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마. 거주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구조적 변경이 아닌 내부장식 등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여객선 이외의 선박	가. 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다. 구명뗏목, 구명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또는 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고정식 가스·포말·가압분무·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 마. 법 제28조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대상이 아닌 선박은 길이·너비·깊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비 고 1. 항해구역의 변경 등으로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적용에 변경이 있어 구명뗏목, 구명정 등 선박시설을 제거한 경우는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여객선 외의 선박의 가목에서 라목에 해당하는 설비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은 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변경이나 개조 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경하 상태(선박에 사람, 화물, 연료, 윤활유, 선박평형수, 탱크안의 청수(淸水) 및 보일러수, 소모 저장품과 여객 및 선원의 휴대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게중심까지의 수직거리가 변경이나 개조 전보다 늘어나지 않는 경우 나. 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의 제·개정 또는 새로운 적용 등에 따른 선박시설의 변경이나 개조 및 구명설비와 소방설비의 변경이나 개조(제32조제1항에 따른 복원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2.2항을 제2.3항으로 하고,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하며, 제2.4항을 제2.5항으로 하고, 제2.5항을 제2.6항으로 하며, 제2.6항을 제2.7항으로 하고, 제2.7항을 제2.8항으로 하며, 제2.8항을 제2.9항으로 하고, 제2.9항을 제2.10항으로 하며, 제2.10항을 제2.11항으로 하고, 제2.11항을 제2.12항으로 하며, 여객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P) 제3호 표 중 1.4항의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earth station”으로 하며, 제5호 표 중 제3.1항의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 **”을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로 하고,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 이 선박은 _____을(를) 연료로 사용 시 적용되는 협약 제II-1장 G편 요건을 준수함* /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as fuel*/N.A.*

별지 제12호서식의 화물선안전무선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R) 제2항 표 중 1.4호의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earth station”으로 하고, 4.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

.1 위의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구조, 기관 및 설비의 상태가 만족한 상태에 있으며 협약제II-1장 및 제II-2장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화재안전장치와 설비 및 화재제어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

the condition of the structure, machinery and equipment as defined in the above regulation was satisfactory and that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requirements of chapters II-1 and II-2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relating to fire safety systems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2 이 선박은 _____을(를) 연료로 사용 시 적용되는 협약 제II-1장 G편 요건을 준수함* /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II-1 of the Convention using _____as fuel*/N.A.*

별지 제14호서식 중 화물선안전설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E) 제3호 표 중 제3.1항을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 **”을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

dionavigation receiver*, **”로 하고,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 _____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2. 대빛 진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davit launched lifeboats			3. 자유강하식 구명정의 총수 Total number of free fall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3.2 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7)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7)		
2.2 자체 복원식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제3장 43규칙**) Number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43**)			3.3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6)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6)			3.4 내화형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2.4 자장식 공기공급장치를 갖춘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8) Number of lifeboats with a self-contained air support system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8)			4. 모터 구명정의 수(위 제2항 및 제3항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5 내화 구명정의 수(제3장 제31규칙 및 LSA Code 4.9) Number of fire-protected lifeboats (regulation III/31 and LSA Code, section 4.9)			4.1 탐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2.6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5.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2.6.1 구명정의 수 Number			5.1 위의 제2항 및 제3항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in 2 and 3 above		
2.6.2 종류 Type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Continued)

항목 Item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d side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6. 구명뗏목 Liferafts			8.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6.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required			9. 방수복 Immersion suits	
6.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9.1 총수량 Total number	
6.1.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9.2 구명조끼의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6.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s are not required			10. 노출보호복의 수 Number of anti-exposure suits	
6.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11. 구명설비용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6.2.2 수용인원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11.1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의 수 Number of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s	
6.3 제III장 제31규칙 1.4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required by regulation III/31.1.4			11.1.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s (SART)	
7. 구명부환의 수 Number of lifebuoys			11.1.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11.2 쌍방향 VHF 무선 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2.2항을 제2.3항으로 하고, 제2.3항을 제2.4항으로

하며, 제2.4항을 제2.5항으로 하고, 제2.5항을 제2.6항으로 하며, 제2.6항

* 1986년 7월 1일부터 1998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건조된 선박에 적용되는 협약 1983 개정안(MSC.6(48))을 참고할 것
Refer to the 1983 amendments to SOLAS (MSC.6(48)), applicable to ships constructed on or after 1 July 1986, but before 1 July 1998 in the case of self-righting partially enclosed lifeboat(s) on board.

을 제2.7항으로 하고, 제2.7항을 제2.8항으로 하며, 제2.8항을 제2.9항으로 하고, 제2.9항을 제2.10항으로 하며, 제2.10항을 제2.11항으로 하고, 제2.11항을 제2.12항으로 하며, 제2.12항을 제2.13항으로 하고, 화물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C) 제3호 표 안의 내용 중 1.4호의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earth station”으로 하며, 4.2호를 삭제하고, 제5호 표 중 제3.1항의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 **”을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로 하며, 2.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 이 선박은_____을(를) 연료로 사용 시 적용되는 협약 제Ⅱ-1장 G편 요건을 준수함* / 해당사항 없음*

the ship complied with part G of chapter Ⅱ-1 of the Convention using_____as fuel*/N.A.*

별지 제16호서식 중 “「국제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로 하고, 제5항*1 및 *2를 삭제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5. 규칙 2.2.5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본선에 제공되어야 함. :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

.2* 규칙 2.2.7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적하지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상기 1)항에 참조된 적하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and

.3*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중 “「액화가스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액화가스산적운송코드」로 하고, 제6항*1 및 *2를 삭제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6. 규칙 2.2.3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본선에 제공되어야 함. :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3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4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4 of the Code;

.2* 규칙 2.2.5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4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적하지침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a

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4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 .1)*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 .3)*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 .4)* 상기 1)항에 참조된 적하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and

.3*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18호서식 중 “「국제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국제산적화학물코드」”로 하고, 제6항.1 및 .2를 삭제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6. 규칙 2.2.5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본선에 제공되어야 함. :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²⁾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²⁾ ;

.2 규칙 2.2.7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²⁾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²⁾:

(1)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²⁾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²⁾;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²⁾; or

(3) 상기 6항에 참조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승인된 적하범위 내에서의 적하²⁾;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or

(4)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²⁾; 그리고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²⁾; and

.3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²⁾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²⁾

별지 제19호서식 중 “「위험화학품산적운반선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규칙」”을 “「위험화학품산적운송코드」”로 하고, 제6항*.1 및 *.2를 삭제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6. 규칙 2.2.1.1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가 본선에 제공되어야 함.;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manuals required by paragraph 2.2.1.1 of the Code have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1* 규칙 2.2.1.2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1.2 of the Code ;

.2* 규칙 2.2.1.3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1.2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waiver permitted by paragraph 2.2.1.3 of the Code is granted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1.2 of the Code is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1)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3) 상기 6항에 참조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승인된 적하범위 내에서의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or

(4)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지침서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 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그리고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manual referred to in 6 above; and

.3*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별지 제21호서식 고속선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 제3항 표 안의 내용 중 1.4호의 “INMARSAT 선박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earth station”으로 하며, 4.2호를 삭제하고, 제5항 표 안의 내용 중 14호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VDR)”을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으로 하고,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VDR)

별지 제23호서식 중 “부력중심”을 “부면심(浮面心, 트림이 생기기 전의 수면선과 트림이 생긴후의 수면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하고, “hight”를 “height”로 하며, “부심에서 _____이며(최상층 갑판으로부터 _____m)* (용골 상부부터_____m)* 이다.”를 “길이방향의 부면심(浮面心)에서 (최상층 갑판으로부터 하방으로 _____mm)* (용골 하면으로부터 상방으로 _____mm)* 에 (표시)* (규정)* 되어있다.”로 하고, “is”를 “is (marked)* (defined)* at”로 하며, 「2000 국제고속선안전코드」에 따른 설비기록부 제3항 표 안의 내용 중 16호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VDR)”을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으로 하고, 제17호를 “항해자료기록기(VDR) Voyage data recorder(VDR)”로 하며, 제4항의 1.4호 “INMARSAT 선박 지구국 INMARSAT ship earth station”을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earth station”으로 하고, 4.2호를 삭제하며,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방향 현장 무선통신기 121.5MHz 및 123.1MHz

Two-way on-scene radiocommunications 121.5 MHz & 123.1MHz

별지 제25호서식 중 “포장된 형태의 폐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선박운송에 관한 국제코드(INF CODE)”를 “「국제 방사능핵연료 화물운송코드(INF CODE)」”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이 선박은 규칙의 모든 관련 작업 요건이 준수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화물의 산적 운송에 적합함.
That the ship is suitable for the carriage in bulk of the following products, provided that all relevant operational provisions of the Code are observed.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Conditions of carriage*				
	탱크번호 Tank Numbers	최저온도 Minimum Temperature (°C)	최대압력 Maximum Pressure (kg/m ²)	최대밀도 Maximum Density	탱크 적하 조건 Tank Loading Condition
*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1에 계속됨 Continued on attachment 1, signed and dated sheets. *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탱크번호는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 2의 탱크 배치도에 명시되어 있음 Tank numbers referred to in this list are identified on attachment 2, signed and dated tank plan. † 이 란에는 적하화물에 대한 탱크번호, 최저온도, 최대압력, 최대밀도 및 적하 조건이 명기되어야 함 Tank numbers, min. temperature, max. pressure, max. density and tank loading conditions are to be specified in this column.					

5. 규칙 1.3*/2.6.2*에 따라 이 선박에 대한 규칙의 규정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That, in accordance with 1.3*/2.6.2*, the provisions of the Code are modified in respect of the ship in the following manner:

6. 규칙 2.2.5에 따라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가 본선에 제공되어야 함. :
That the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quired by paragraph 2.2.5 of the Code has been supplied to the ship in an approved form.
7. 이 선박은 다음과 같이 적하되어야 함:
That the ship must be loaded:
- 1.* 규칙 2.2.6에 따라 설치된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사용하여 손상/비손상복원성요건에 적합함이 검증된 조건으로만 적하 only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compliant with intact and damage stability requirements using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f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2.6 of the Code;
- 2.* 규칙 2.2.7에 의해 면제되거나, 규칙 2.2.6에 의해 요구되는 승인된 복원성적하지침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다음에 승인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적하되어야 함.
where a dispensation permitted by paragraph 2.2.7 of the Code applies and the approved stability instrument required by paragraph 2.2.6 of the Code not fitted, loading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approved methods:
- 1.)*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서 제공된 적하 조건에 적합 ; 또는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conditions provid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 2.)* 승인된 방법에 의해 원격으로 검증된 조건으로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loading conditions verified remotely using an approved means; or
- 3.)* 상기 6항에 따른 승인된 적하 및 복원성 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또는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which lies within an approved range of conditions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or
- 4.)* 상기 1)항에 참조된 적하자료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KG/GM 값에 적합한 손상/비손상복원성 요건에 따라 적하 in accordance with a loading condition verified using approved critical KG/GM data defined in the approved loading and stability information booklet referred to in 6 above; and
- 3.* 이 증서에 기재된 적하 제한 조건에 따라야 함.
in accordance with the loading limitations appended to this Certificate.

만약 위의 적하자료에 의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적하하려는 경우는 그 적하 조건의 판별에 필요한 계산서를 미리 주관 청 또는 주관청에 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Where it is required to load the ship other tha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instruction, then the necessary calculations to justify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s should be communicated to the certifying Administration who may authorize in writ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loading condition.**

이 증서는 규칙 제1.5절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을 조건으로 _____ 년_____ 월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_____day of_____ _____ subject to surveys in accordance with 1.4 of the Code.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움 것
Delete as appropriate.

** 승인을 받은 다른 적하자료를 이 증서에 포함시키는 대신 서명 및 날짜가 적힌 별지로 이 증서에 첨부할 수 있음
Instead of being incorporated in the Certificate, this text may be appended to the Certificate if duly signed and stamped.

210mm x 297mm[보존용지(1종) 220g/m²]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양수산부장관 印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검 사 의 확 인

ENDORSEMENT FOR ANNUAL AND INTERMEDIATE SURVEYS

이 증서는 선박이 제1.4.2항에 따른 검사 결과 관련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4.2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4.6.8.3항에 따른 연차 검사/중간 검사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4.6.8.3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 제1.4.6.8.3항에 따른 연차*/중간*검사 결과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n annual*/intermediate* survey in accordance with 1.4.6.8.3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4.6.3항이 적용되는 경우 증서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일 때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certificate if valid for less than 5 years where 1.4.6.3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제1.4.6.3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4.6.3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정기 검사 완료 후 제1.4.6.4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이서
Endorsement where the renewal survey has been completed and 1.4.6.4 applies

이 증서는 선박이 규칙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므로 규칙의 1.4.6.4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all, in accordance with 1.4.6.4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제1.4.6.5/1.4.6.6항이 적용되는 경우 검사 예정 항에 도착 시까지
또는 유예기간까지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to extend the validity of the certificate until reaching the
port of survey or for a period of grace where 1.4.6.5/1.4.6.6 applies

이 증서는 규칙 제1.4.6.5*/1.4.6.6* 항에 따라 _____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4.6.5*/1.4.6.6* of the Code,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제1.4.6.8항이 적용되는 경우 연차일을 앞당기는 것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dvancement of anniversary date where 1.4.6.8 applies

규칙 제 1.4.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4.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규칙 제 1.4.6.8항에 따라 새로운 연차일은 _____이다.

In accordance with 1.4.6.8 of the Code, the new anniversary date is _____.

서명
Signed: _____

장소
Place: _____

날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1

ATTACHMENT 1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이 별지는 전 4항에 기재된 화물 및 운송조건에서 계속됨

Continued list of products to those specified in section 3, and the conditions of their carriage.

화 물 Products	운 송 조 건 (탱 크 번 호 등) Conditions of carriage (tank numbers, etc.)

날 짜
Date: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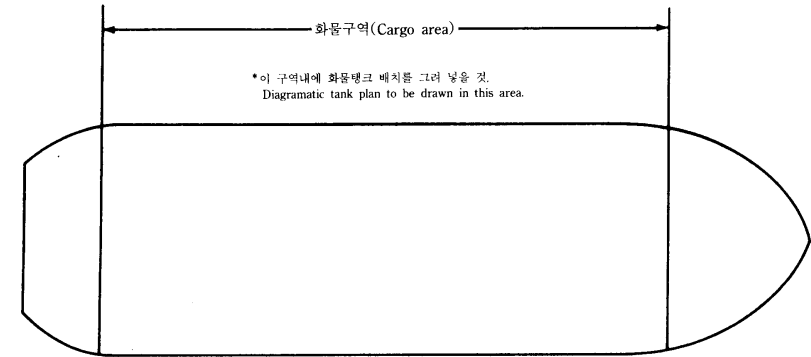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별지 2

ATTACHMENT 2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E OF FITNESS
FOR THE CARRIAGE OF LIQUEFIED GASES IN BULK

탱 크 배 치 도
TANK PLAN

선 명
Name of ship: _____

선박번호 또는 신호부자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_____



날 짜
Date: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증서번호 제 호
Cert. No. _____



특수목적선안전증서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이 증서에는 설비기록부(양식 SPS)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Certificate shall be supplemented by a Record of Equipment(Form SPS).

이 증서는 특수목적선안전코드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으로 발행합니다.
Issued in compliance with provisions of the Code of Safety for Special Purpose Ships, and under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by _____.

선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r Letters	선적항 Port of Registry	총톤수 Gross tonnage	IMO 번호* IMO number*

선박의 특수용도
Ship's special purpose _____

운항 허용 해역(SOLAS 제4장 제2규칙)
Sea areas in which ships is certificated to operate(SOLAS regulation IV/2)

용골 거치일
Date on which keel was laid or ship was at a similar stage of construction or, where applicable, date on which work for a conversion or an alteration or modification of a major character was commenced _____.

이 증서는 다음 사항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 이 선박은 코드 제1.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았음
That the ship has been surveyed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 of regulation 1.6 of the Code.
- 이 선박의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That the survey showed that:
 - 이 선박은 아래와 같이 코드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 선체, 주 그리고 보조 기관, 보일러 및 다른 압력용기들
the structure, main and auxiliary machinery, boilers and other pressure vessels.
 - 수밀수직구역의 배치 및 상세
the watertight subdivision arrangements and details;
 - 이 선박은 방화구조, 화재안전장치 및 설비 그리고 화재제어도에 관한 코드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tructural fire protection, fire safety system and appliances and fire control plans;

* IMO에서 Res. A.1117(30)로 채택된 IMO 선박식별번호계획에 따를 것
In accordance with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dopted by the Organization by resolution A1117(30).

- 구명설비와 구명정, 구명뗏목, 구조정의 의장품이 코드의 요건에 따라 비치되어 있음
the life-saving appliance and the equipment of the lifeboats, liferafts and rescue boats wer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구명줄 발사기와 구명설비용 무선설비를 코드의 요건에 따라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a line-throwing appliance and radio installation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이 선박은 무선설비에 관한 코드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radio installations;
 - 구명설비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기능이 코드에 적합함
the functioning of the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 선박용 항해설비, 도선사용 승하선장치 및 해상 간행물에 관한 코드의 요건에 적합함
the ship compli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s regards shipborne navigational equipment, means of embarkation for pilots and nautical publications;
 - 이 코드 및 현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의 요건에 따라 음향신호와 조난신호의 수단, 등화 및 형상물을 비치하고 있음
the ship was provided with lights, shapes, means of making sound signals and distress signa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in Force;
 - 그 밖의 모든 점에서 이 선박은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함
in all other respects the ship complied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3. 면제증서가 발행되었음/ 발행되지 않았음*
That an Exemption Certificate has/has* not been issued.
4. 이 선박은 1974 SOLAS 협약(개정 포함)에 따라 발행된 증서를 소지하고/소지하지 않고* 있다.
That the ship has/has not* been provided with Certificates issued under the 1974 SOLAS Convention as amended.

이 증서는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until _____day of _____ .

이 증서 발급을 위한 검사완료일:
Completion date of the survey on which this certificate is based: _____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on the _____day of _____ .

해양수산부장관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급법인명(한글 및 영문)

*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본 증서 제2.1항에 해당하는 선체, 기관 및 설비의 연차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SURVEYS RELATING TO HULL, MACHINERY AND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1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본 증서 2.2, 2.3, 2.4, 2.6, 2.8 및 2.9항에 해당하는 구멍 및 그 밖의 설비의 연차 및 중간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ANNUAL AND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LIFE-SAVING APPLIANCES AND OTHER EQUIPMENT REFERRED TO IN SECTION 2.2, 2.3, 2.4, 2.6, 2.7, 2.8 AND 2.9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차/중간* 검사
Annual/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_____

장 소
Place: _____

날 짜
Date: _____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본 증서 2.5항에 해당하는 무선설비의 정기적 검사에 대한 이서
ENDORSEMENT FOR PERIODICAL SURVEYS RELATING TO RADIO INSTALLATIONS REFERRED TO IN SECTION 2.5 OF THIS CERTIFICATE

이 증서는 코드 제1.6항에 따른 검사결과 선박이 코드의 관련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t a survey required by 1.6 of the Code, the ship was found to compl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중 간 검 사
Periodical Survey: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연 차 검 사
Annual Survey: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이서
Endorsement for the extension of the certificate

선박이 코드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본 증서는 코드 제1.7.3에 따라 _____ 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The ship complies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 and this certificate should, in accordance with 1.7.3, be accepted as valid until _____.

서 명
Signed: 장 소
Place: 날 짜
Date:

특수목적선 안전증서에 대한 설비기록부(양식 SPS)
Record of Equipment for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Form SPS)

이 기록부는 특수목적선 안전설비증서에 영구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This Record Shall be permanently attached to the Special Purpose Ship Safety Certificate.

1. 선박의 내용
Particular of ship
선박명
Name of ship
선박번호
Distinctive number of letters
특수용도 승선자 수(여객 포함)
Number of special personnel on board(including passengers) for which certified
무선설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가진 최소인원
Minimum number of persons with required qualifications to operate the radio installations
2. 구명설비의 상세
Details of life-saving appliances

1. 구명설비가 제공되는 총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for which life-saving appliances are provided		
	좌현 Port Side	우현 Starboard Side
2. 구명정 총수 Total number of lifeboats		
2.1 구명정에 수용되는 인원 Total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2.2 부분폐형 구명정의 수 Number of partially enclosed lifeboats(SOLAS regulation III/42)		
2.3 전폐형의 구명정의 수 Number of totally enclosed lifeboats(SOLAS regulation III/44)		
2.4 그 밖의 구명정 Other lifeboats		
2.4.1 구명정의 수 Number		
2.4.2 형식 Type		
3. 모터 구명정의 수(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 Number of motor lifeboats(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3.1 탑조등이 장치된 구명정의 수 Number of lifeboats fitted with searchlights		
4. 구조정의 수 Number of rescue boats		
4.1 위의 구명정 총수에 포함되는 구조정의 수 Number of boats which are included in the total lifeboats shown above		

5. 구명뗏목 Liferafts	
5.1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한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required	
5.1.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1.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5.2 승인된 진수장치가 필요 없는 것 Those for which approved launching appliance are not required	
5.2.1 구명뗏목의 수 Number of liferafts	
5.2.2 수용인원의 수 Number of persons accommodated by them	
6. 구명튜브의 수 Number of lifebuoys	
7 구명조끼의 수 Number of lifejackets	
8. 방수복 Immersion suits	
8.1 총 수량 Total number	
8.2 구명조끼 요건에 적합한 방수복의 수 Number of suits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for lifejackets	
9. 보온기구의 수* Number of thermal protective aids*	
10. 구명설비용 무선설비 Radio installations used in life-saving appliances	
10.1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수 Number of radar transponders (SART)	
10.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10.3 쌍방향 VHF 무선 전화장치의 수 Number of two-way VHF radiotelephone apparatus	

* LSA코드 제4.1.5.1.24항, 제4.4.8.31항 및 제5.1.2.2.13항에서 요구되는 것은 제외함
Excluding those required by the LSA Code, paragraphs 4.1.5.1.24, 4.4.8.31 and 5.1.2.2.13.

3. 무선설비의 상세 Details of radio facilities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 기본장치 Primary systems		2 제2차 경보장치 Secondary means of alerting	
1.1 VHF 무선설비 VHF radio installation		3 해상안전정보의 수신을 위한 설비 Facilities for reception of maritime safety information	
1.1.1 DSC 인코더 DSC encoder		3.1 NAVTEX 수신기 NAVTEX receiver	
1.1.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3.2 EGC 수신기 EGC receiver	
1.1.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3.3 HF 직접인쇄 무선전신 수신기 HF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 receiver	
1.2 MF 무선설비 MF radio installation		4 위성 EPIRB Satellite EPIRB	
1.2.1 DSC 인코더 DSC encoder		4.1 COSPAS-SARSAT COSPAS-SARSAT	
1.2.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5 VHF EPIRB VHF EPIRB	
1.2.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6 선박의 수색 및 구조 위치확인장치 Ship's search and rescue locating device	
1.3 MF/HF 무선설비 MF/HF radio installation		6.1 레이더 수색 및 구조 트랜스폰더 Radar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 (SART)	
1.3.1 DSC 인코더 DSC encoder		6.2 AIS 수색 및 구조 송신기 AIS search and rescue transmitters (AIS-SART)	
1.3.2 DSC 청수수신기 DSC watch receiver			
1.3.3 무선전화 Radiotelephony			
1.3.4 직접인쇄전신 Direct-printing radiotelegraphy			
1.4 인정된 이동식 위성 서비스 선박지구국 Recognized mobile satellite service ship earth station			

4. 무선설비의 이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제IV장 제15규칙 6항 및 7항) Methods used to ensure availability of radio facilities (regulation IV/15.6 and 15.7)

- 4.1 설비의 이중화
Duplication of equipment _____
- 4.2 육상정비
Shore-based maintenance _____
- 4.3 선상정비능력
Of-sea maintenance capability _____

5. 항해장비 및 설비의 상세

Details of navigational systems and equipment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항목 Item	실제조치 Actual provision
1.1 기준자기 컴파스* Standard magnetic compass*		3.5 자동추적장치* Automatic tracking aid*	
1.2 예비의 자기 컴파스* Spare magnetic compass*		3.6 제2 자동추적장치* Second automatic tracking aid*	
1.3 자이로 컴파스* Gyro compass*		3.7 플로팅설비* Electronic plotting aid*	
1.4 자이로 컴파스 선수 리피터* Gyro compass heading repeater*		4.1 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	
1.5 자이로 컴파스 방위 리피터* Gyro compass bearing repeater*		4.2 장거리 식별 및 추적장치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system	
1.6 선수 또는 항적 제어장치* Heading or track control system*		5.1 항해자료기록장치** Voyage data recorder(VDR)**	
1.7 방위환 또는 컴파스 방위장치* Pelorus or compass bearing device*		5.2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 Simplified Voyage data recorder (S-VDR)**	
1.8 선수방위 수정 장치 Means of correcting heading and bearing		6.1 선속거리계(대수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through the water)*	
1.9 선수방위 발신기* Transmitting heading device(THD)*		6.2 선속거리계(대지속력)* Speed and distance measuring device(over the ground in the forward and athwartship direction)*	
2.1 해도/전자해도 표시 및 정보 시스템 (ECDIS)** Nautical chart/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ECDIS)**		6.3 음향측심기* Echo sounding device*	
2.2 ECDIS의 이중화 Back up arrangement for ECDIS		7.1 타각지시기 등*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	
2.3 항해용간행물 Nautical publication		7.2 회두각 속도계* Rate of turn indicator*	
2.4 전자 항해용간행물의 이중화 Back-up arrangement for electronic nautical publication		8 음향수신장치* Sound reception system*	
3.1 위성항법장치/지상파무선항해 장치용 수신기/다중무선항해장치용 수신기*, ** Receiver for a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terrestrial radio navigation system/multi-system shipborne radionavigation receiver*, **		9 비상조타실의 전화* Telephone to emergency steering position*	
3.2 9GHz 항해용 레이더* 9GHz radar*		10 주간신호등* Daylight signalling lamp*	
3.3 제2항해용 레이더(3 GHz/9 GHz**)* Second radar(3 GHz/9 GHz**)*		11 레이더 반사기* Radar reflector*	
3.4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Automatic radar plotting aid(ARPA)*		12 국제신호서 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13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제3권 IAMSAR Manual, Volume III	

* 제5장 19규칙에 따라 이 요건에 대한 대체설비는 허용된다. 그 밖의 설비의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Alternative means of meeting this requirement are permitted under regulation V/19. In case of other means they shall be specified.

**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은 지울 것
Delete as appropriate.

이 기록부는 모든 점에서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is Record is correct in all respects.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에서 발행합니다.
Issued at _____ on the _____ day of _____.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인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글 및 영문)
선 급 법 인 명(한글 및 영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임시승선자) 법 제2조제9호 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란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임시승선자)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해당 선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해당 선박의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업원	2. ----- 포함한다) 및 선박정비, 화물관리 등 ----- -----
3.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실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선박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자	3. 시험·조사·지도·단속·점검·실습----- -----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9. 여객선에 적재가 곤란한 악취가 나는 농산물·수산물 운송차량, 혐오감을 주는 가축운송차량 및 폭발성·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9. 제3호에 따른 선박을 이용한 공익 목적의 행사(해당 선박의 출항지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한정한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자

있다)

<신설>

<신설>

제14조(만재흡수선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만재흡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1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
가. 「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을 운송하는 차량
나.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
다. 산소공급장치를 가동하여 살아있는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
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른 화약류, 인화성 액체류, 가연성 물질류 등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승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만재흡수선의 지정 등) ①

1. (현행과 같음)

2. 갑판에 목재를 적재하여 운
송하는 선박 : 제1호 준용

3. (생 략)

② (생 략)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최대
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
승선자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 산정한다.

1. 승선인원에 산입되지 아니하
는 자

가. 정박 중에 선내 관람 등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 하역
· 수리작업 등을 위한 작
업원, 선원 교대자 등 해당
항에서만 승선하는 자

나. · 다. (생 략)

2. 여객실, 선원실, 그 밖의 최대
승선인원을 산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차지하는 장소에 상응
하는 인원 수를 제외하고 산
정

3.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1조(임시검사) ① (생 략)

2. ----- 실어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① -----

-----.

1. -----

가. 선내 -----
----- 하역
· 수리작업 · 해상공사 --
----- 교대자(해당 선
박의 정박 중에 한정한다)

나. · 다. (현행과 같음)

2. -----

----- 실은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시검사) ① (현행과 같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생 략)

2. 선박의 추진과 관계있는 기
관 및 그 주요부의 교체 · 변
경 등으로 기관의 성능에 영
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3. 타(舵) 또는 조타장치의 변경
으로 선박의 조종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

4. · 5.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 략)

6.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확인
받은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
한각도 및 제한반경을 변경하
려는 경우

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기
관의 교체 및 기관성능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 주
요부의 교체 · 변경 등의 ----

3. -----
----- 조종성능에 중대한

4.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제한 반지름 -----

7. ~ 9. (생략)
 ⑤ ~ ⑨ (생략)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액화가스산적운송선
 가. (생략)
<신설>

 나. (생략)
 7. ~ 12. (생략)
 ② ~ ⑥ (생략)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임시검사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으로서 제21조제2항

7. ~ 9.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
 가. (현행과 같음)
 나. 2016년 7월 1일 이후에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으로서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 코드에 규정된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 :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국제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
 다. (현행 나목과 같음)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국제협약검사의 종류) --

 --.
 1. ~ 4. (현행과 같음)
 5. -----

각 호 및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받게 되는 검사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 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 3. (생략)
<신설>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협약검사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검사증서에 해당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였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 제4항 -----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 정지)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91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약 위반 선박에 대한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제28조(외국선박에 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발급) ① -----
 --- 법 제12조제4항-----

 -----.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국제만재흡수선증서가 발급된 경우 해당 증서의 교부를 요청한 외국정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

	<u>야 한다.</u> 1. <u>국제만재흡수선증서 사본</u> 2. <u>건현계산에 사용된 검사 보고서 사본</u> 3. <u>건현계산서 사본</u>		<u>경우는 제외한다.</u> 6. <u>고정식 가스·포말·가압분무·불활성가스 소화장치 및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u> 7. <u>여객선 거주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u>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선박구조 등 변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u><신 설></u>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생 략) 나. 그 밖에 복원성 유지 의무 선박의 경우: 변경 또는 개조사항을 표시한 <u>복원성자료</u> ④·⑤ (생 략)	③ ----- ----- ----- ----- ----- ----- 1. (현행과 같음) 2. <u>개조사항을 요약한 서류</u> 3.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u>복원성자료(대행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료를 말한다)</u>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제32조(선박시설의 변경허가 등)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생 략)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은 별표 15의5와 같다.			
1. <u>선박의 길이·너비·깊이의 변경</u>				
2. 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의 기준 등의 적용이 다르게 되도록 하는 <u>선박의 용도 변경</u>				
3. <u>선박의 추진용으로 사용되는 원동기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동일한 형식 및 출력의 원동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				
4. <u>조타설비의 변경 또는 개조</u>				
5. <u>구멍뿔목, 구멍정 또는 강하식탑승장치의 변경 또는 개조. 다만, 제작일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로 교체하는</u>				

②

경우

제42조의3(형식증인의 변경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우

제45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
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
른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
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
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
다.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
른

확인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7조(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설
비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중 외주 또는 구매하는 부
분에 대한 설비를 제외한 설비
를 말한다. 다만, 시험·검사설
비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시험·
검사설비를 3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제62조(지도·감독) <신 설>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의 컨테이너시험 성적서를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해당 컨테이너지점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

경우-----.

1. 2. (현행과 같음)

제62조(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_____

----- 인정하는 경우 -----

<삭 제>

요한 경우에는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생략)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적재
된 화물을 처분하는 경우 법 제
25조제5항에 따른 공매를 하되,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1. 공매할 컨테이너 및 적재화
물의 종류 및 내용

2. 3. (생략)

③ (생략)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컨
테이너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
여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컨테이너의 안전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실린

1. ----- 실린 화
물-----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7조(하역설비의 확인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1톤 이상의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하역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제한하중등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지브크레인(Jib Crane) : 제한하중 및 <u>제한반경</u> 3. 4. (생략) ② ③ (생략)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컨테이너에 <u>적재된</u> 화물을 외국으로 운송하려는 화주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물의 총중량에 관한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에 화물을 <u>적제한</u> 상태로 화물의 총중량을 「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계량기로 측정하는 방법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제한 반지름</u>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79조(화물정보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실린</u> ----- ----- ----- ----- ----- 1. ----- <u>실은</u> ----- ----- ----- ----- -----	2. 컨테이너에 <u>적재된</u> 화물 및 화물을 고정·보호하기 위한 장비 등과 컨테이너 자체의 중량을 각각 합산하는 방법 (화주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총중량을 계산·관리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를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생략)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u>제21조제8항</u>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제32조제5항에 따른 선박구조 등 변경허가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36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38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2. ----- <u>실린</u>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선박검사증서 등의 재발급 등) ① ----- ----- ----- ----- <u>제21조제9항</u> ----- ----- ----- ----- ----- ----- ----- -----
---	---	--	--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인서,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지정서, 제44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서, 제48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확인서, 제54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56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증서, 제57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58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59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증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 제65조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정기(계속)점검방법승인서,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등, 제78조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및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

지 제77호서식의 증서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 ③ (생략)

<신 설>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전자증서의 발급) 제10조제4항 및 제11호제3항에 따른 건조(별도건조)검사증서,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제21조제9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 면제증서, 국제만재흡수선면제증서,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연장승인서, 제7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하중등확인서, 제81조제5항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이하

<신 설>

“전자증서”라 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제82조의3(검사신청 서식) 선박소유자가 건조검사,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 국제협약검사, 도면승인, 검정신청, 예비검사, 제한하중 등의 확인,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를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신청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하여 검사를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88조의2(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연 1

<신 설>

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에게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의2(지도·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
1. 선체검사원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마. ----- -----
<신 설>	1) 3급항해사의 해기사면허 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 람
1) ~ 3) (생 략)	2) ~ 4) (현행 1)부터 3)까 지와 같음)
2. 기관(機關)검사원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마. ----- -----
<신 설>	1) 3급기관사의 해기사면허 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 력(승선경력을 산정할 때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 람
1) · 2) (생 략)	2) · 3) (현행 1) 및 2)와 같 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